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58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 조은희 · 서천호 · 박정하

이성권 • 이달희 • 이종욱

김용태 · 강명구 · 이만희

신동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등 특정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 성인의 경우 자율적 시행으로 안전교육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제도권 내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국민 안전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또한, 안전교육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필 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등).

법률 제 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공기관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중앙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10조의3(군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인
- 2.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 3.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편성된 민방위 대원 제13조제1호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정신재활시설"로 한다. 제3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안전교육의 통합 실시)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제1항 중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제9조·제10조·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 제2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공공기관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른 지방공기업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 교육)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 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 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다.

- 1.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 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 <u>사회복귀시설</u> 등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 · 3. (생략) <신 설>

제	102	준의	3(- <u></u> 1	신	등	에	대	한	안	전
	교육	육)	행경	청안	전부	-장-	관	또	느	국
	<u>방</u> .	쿠 장	·관은	<u>-</u> [구음	각	ই	의	어	느
	<u>하</u> ι	구 에	하	당	하는	시	-람	에	대	하
	여	안	전교	_육 :	을 ^	실시	하	ं व) <u>‡</u>	한
	<u>다.</u>									
	<u>1.</u>	٢ <u>-</u> ਹ	-인	의 >	지위	및	복	-무	에	관
	و	<u>ト</u> フ]본	법_	제	2조	제]	호	에	따

- 른 군인
- 2.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 3.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편성된 민방위 대원

제13조(시	·회복지시설	등의	안전
교육)			

	 <u>정신재활</u>
<u>시설</u> -	

2.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안전교육의 통합 실시)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 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0조 • 제10조의2 • 제10조의3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 7ト) ① -----

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 10조의3 및 제11조부터 제13조

② ~ ⑤ (현행과 같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 전문 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전 문인력 관리시스템의 구축・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